

# 프랑스의 기업이익분배법 제정과 현실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과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 ■ 머리말

지난 2007년 현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사 기업을 불문하고 대기업들의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우파 대통령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로서는 생소한 것이어서 국내 언론 또한 여러 차례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원래 프랑스에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바, 따라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익분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약속하였고 이를 실행 과정에 옮겼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dialogue social)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 단체의 반대가 있어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이 구상이 입법화되어 올 7월에 프랑스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도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상생(相生) 차원에서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up>1)</sup> 이때 프랑스의 기업이윤분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과 제정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실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법학의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시각은 아니다. 우리 제헌헌법(1948년)은 '이익균점권'을 이미 규정한 바 있다.

## ■ 2011년 7월 28일 입법의 내용<sup>2)</sup>

### 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노동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성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조직을 인정하는데 이 조문들을 근거로 이익분배 또한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50인 이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혹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 기업에는 사기업은 물론 자본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및 기타 관공서에 귀속되어 있는 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만일 공기업이 경영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법정 가격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당해 연도에 전체 근로자들에게 협정 등을 통해 법률이 강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기업 이익을 이미 배당하였다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해외 영토인 마이오투(Mayotte) 지역은 제외한다.

### 이익의 분배

기업이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기업은 이익배당금을 기업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기업집단에 속하여 노동법에 따라 집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지배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배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다면 산하 기업

2) 법의 원문은 'Loi n° 2011-894 du 28 juillet 2011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2011년 사회보장재정 수정에 관한 법(법률 제2011-894호)'이며 그 중 제1장 제1편 일명 '이익 배당금'에 수록되어 있다. 원문을 찾고자 한다면 다음 참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4409075&fastPos=1&fastReqId=1299695996&categorieLien=cid&oldAction=rechTexte>.

은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각 개별 근로자들의 직책과 연봉 및 경력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이익분배의 시점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단체교섭 등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

기업이 이익배당금의 액수와 분배방법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형태로 대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나 기업위원회에서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어떠한 근로자 대표 조직도 없는 경우는 근로자 전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이익분배를 한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상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초기 제안과 양 당사자 간의 최근 협의 사항, 사업주가 제안했던 상여금 등의 내용이 담긴 불합의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승인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제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금의 공탁이 없다면 기업은 후술할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합의의 결과물인 이익배당의 금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안내서가 각 근로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만일 이익배당금의 분배에 관한 협의를 피하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법의 조문에 의하여 처벌<sup>3)</sup>을 받는다.

이익배분의 합의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익분배에 관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3) 프랑스 노동법은 단체교섭의 이유 없는 회피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이익배당금과 기타 급여 등의 조정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익배당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금을 이유로 단체협약 등 기타 협약과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수당들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보장부담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근로자 소득, 즉 임금, 휴업수당이나 상여금 등에 포함되어도 안 된다. 이익배당금을 받는 것이 사회보장부담금의 인상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근로자당 1,200유로의 한도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사회보장부채세 납부를 면제 받는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의 총액을 그 지역의 사회보장담당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사용자들의 반대 여론

기업의 이익분배 정책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일명 코티(Cotis) 보고서로 불리는 「추가 이윤 및 기업 이익의 분배 및 소득 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이후 더욱 심화되어져 왔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는 사회적 동반자(partenaire social)인 노사단체의 참가는 미미하여 그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은 양자 모두가 법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일명 라세(Larcher)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sup>4)</sup>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MEDEF의 회장인 로렌스 파리조(Laurence Parisot)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배당'과 '자기금융(l'auto-financement)<sup>6)</sup> 두 개로 분류될 뿐이기 때문에 사르코지의

4)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1/05/articles/fr1105011i.htm> 참조.

5) 참고로 노동법 제1조의 내용은 사회적 동반자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입법의 대상(예: 고용, 직업훈련, 단체교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 영어로는 'self-financing'이라고 하며, 기업의 소요자금을 적립금 등 사내 유보이익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적립금이나 준비금으로 사내에 축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주와 근로자, 기업에게 각각 1/3씩 이윤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3분류 주장은 말이 안 되며, 오직 주주들만이 근로자들에 돌아갈 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논리는 그것은 재산권의 영역이어서 국가나 노동조합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7)</sup> 최근 들어서는 파리조는 사용자, 근로자, 주주가 이익을 3분한다는 것은 해마다 기업의 사정이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였다.<sup>8)</sup>

## ■ 프랑스 국민의 기대

프랑스 국민의 약 64%가 이 법을 찬성하여 이 법의 덕택에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BPCE와 <에코>지, 그리고 프랑스 앵포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13%의 국민들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49%의 국민들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반면 32%의 국민만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무응답도 6%였다. 전체 계층에 있어 고무 찬성을 하였는데 특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 간부들과 자영업자들이 53%의 찬성률을 보인 것과 퇴직자의 61%가 찬성을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였다. 법안의 내용대로 연 1인당 12,000유로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의 효과는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구매력의 증가에 관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약 석 달 동안 50%의 프랑스 국민들의 구매 능력은 감소하였고, 약 17%의 국민들의 구매력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sup>9)</sup>

7) 리베라시옹(Liberation), 2009년 2월 17일 기사, '기업의 이익분배 : 파리조는 사르코지에 반대 의견', <http://www.liberation.fr/economie/0101320040-repartition-des-profits-des-entreprises-parisot-ne-suit-pas-sarkozy> 참조.

8) 유럽1(Europe1), 2011년 2월 28일자 기사, 'MEDEF, 제3자에 의한 이익분배는 반대한다', <http://www.europe1.fr/Economie/Medef-contre-le-partage-des-profits-par-tiers-4327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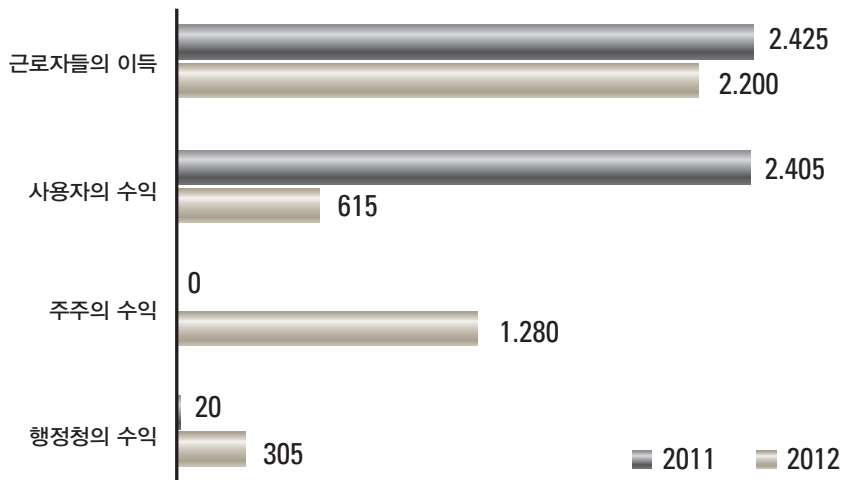
9) 렉스프레스(L'express), 2011년 5월 24일 기사, '프랑스 국민의 62%가 기업이익분배법에 찬성', [http://lexpansion.lexpress.fr/economie/62-des-francais-approuvent-la-prime-lie-aux-dividendes\\_256064.html](http://lexpansion.lexpress.fr/economie/62-des-francais-approuvent-la-prime-lie-aux-dividendes_256064.html) 참조.

## ■ 효과 및 현황

정부는 이 법안으로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평균 1인당 700유로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1년 한 해만 약 24억 유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아래의 그림은 프랑스 재무부가 이익분배금으로 인해 늘어날 근로자의 이익을 나타낸 것으로서 2011년 24억 유로에 이어 2012년에는 근로자들에게 22억 유로가 분배될 것으로 보았다.<sup>11)</sup>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sup>12)</sup>

[그림 1] 재무부가 예측하는 이익분배금의 효과



에코저 / 자료 : 재무부.

10) eurofound 위의 사이트 참조.

11) 출처 : 에코(Les écho), 2011년 9월 27일 기사 '이윤분배: 이익배당금, 근로자들을 기망', <http://www.lesechos.fr/economie-politique/france/actu/0201661238203-partage-des-profits-la-prime-dividendes-decoit-les-salaries-224766.php>

12) 주요 내용은 에코(Les écho), 위의 기사와 렉스프레스(L'express), 2011년 9월 30일 기사, '이익배당금, 큰 실망만' [http://expansion.lexpress.fr/entreprise/prime-dividendes-la-grande-desillusion\\_263563.html#xtor=RSS-115](http://expansion.lexpress.fr/entreprise/prime-dividendes-la-grande-desillusion_263563.html#xtor=RSS-115) 참조.

이 법에 따라 지난 2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기업들은 10월 31일까지 이익분배를 위하여 노동조합 등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많은 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노동조합은 협상 결과 도출된 이익분배액이 겨우 쥐꼬리만하다고 불평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 결과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칠 것 같다. 40여 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그 중 27%(약 10여 곳)만이 이익분배를 할 예정인데 그 액수는 약 250유로(약 38만 원)에서 700유로(약 108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추정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노피(Sanofi)사는 600유로를 제안했지만 근로자 대표들이 거부하였고 슈나이더(Schneider)사와 STM 전자는 겨우 150유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루파마(Groupama)사는 110유로를 수표로 제안하였다. 이 모두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액수로 슈나이더사의 노조 관계자는 그저 이 법은 '상징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오히려 사업주들은 안심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느긋하게 이 법에 대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협상 기한(10월 31일)이 끝나면 이익분배금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입는 근로자의 수 또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프랑스 전체 근로자들의 약 10%인 23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노피(Rhondia)사로 600유로의 이익분배금을 제안하는 대신 전 세계에 걸친 모든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의 상태에 따라 증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익분배금을 정액으로 고착화시킬 구상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익배당금의 부담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 ■ 맺음말

기업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률은 출발 시점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대를 한 반면 사용자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를 낳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다. 먼저 50인 이상의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원래 목적인 프랑스 전체 국민들의 근로소득 향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익분배에 있어서도 지난 2년간 벌어들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보다 올해의 지급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이 늘어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와 민감한 시장 상태로는 힘든 면이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안이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이익분배를 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대로 '상징적'인 액수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이 법은 아직까지는 절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과 정부에서의 이익분배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이 법이 모태가 되어 정부의 성격과 관계 없이 더 많은 분배의 규칙이 전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 또한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이윤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프랑스의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비록 프랑스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KLI**